

# [ 정 정 대 비 표 ]

## ■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

펀 드 명	BNK튼튼배당만기관리형장기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정 정 서 류	(간이)투자설명서
정 정 사 유	-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효 력 발 생 일	2025년 05월 15일

## ■ 정정대비표

### [간이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b>[요약정보]</b>											
투자비용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5.04.21 기준으로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수익률)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5.04.21 기준으로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	-	- 2025.04.21 기준으로 업데이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종류(Class)</th> <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 </tr> <tr> <td>온라인슈퍼(S)</td> <td>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 </tr> </table>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종류(Class)</th> <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 </tr> <tr> <td>온라인슈퍼(S)</td> <td>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집합투자기구(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 </tr> </table>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집합투자기구(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집합투자기구(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b>[요약정보]</b>			
투자비용	최근 결산기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5.04.21 기준으로

	재무제표 확정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수익률)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5.04.21 기준으로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	-	- 2025.04.21 기준으로 업데이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 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Class)</th> <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 </tr> </thead> <tbody> <tr> <td>온라인슈퍼(S)</td> <td>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 </tr> </tbody> </table>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Class)</th> <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 </tr> </thead> <tbody> <tr> <td>온라인슈퍼(S)</td> <td>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집합투자기구(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 </tr> </tbody> </table>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집합투자기구(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집합투자기구(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	- 2025.05.15: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	- 2025.04.21 기준으로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 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가. (생략) 나. 종류형 구조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Class)</th> <th>가입자격</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r> </tbody> </table>	종류(Class)	가입자격			가. (현행과 동일) 나. 종류형 구조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Class)</th> <th>가입자격</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r> </tbody> </table>	종류(Class)	가입자격		
종류(Class)	가입자격										
종류(Class)	가입자격										

		S-T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u>	S-T <u>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u>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문구 정정	가. 투자 대상 - 다음 각호의 --(생략)-- 합니다. 1. ~ 2. (생략) 3. 투자신탁 해지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 5. (생략) 나. (생략)	가. 투자 대상 - 다음 각호의 --(현행과 동일)-- 합니다. 1. ~ 2. (현행과 동일)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 5. (현행과 동일) 나. (현행과 동일)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가. ~ 다. (생략) 라. 이 집합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가. ~ 다. (현행과 동일) 라. 이 집합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가. 매입 (1) (생략) (2) 투자신탁 가입제한 및 종류별 가입자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종류(Class)</th> <th>가입자격</th> </tr> </thead> <tbody> <tr> <td>S-T</td> <td><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u></td> </tr> </tbody> </table> (3)~(5) (생략) 나. ~다. (생략)	종류(Class)	가입자격	S-T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u>	가. 매입 (1) (현행과 동일) (2) 투자신탁 가입제한 및 종류별 가입자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종류(Class)</th> <th>가입자격</th> </tr> </thead> <tbody> <tr> <td>S-T</td> <td><u>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u></td> </tr> </tbody> </table> (3)~(5) (현행과 동일) 나. ~다. (현행과 동일)	종류(Class)	가입자격	S-T	<u>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u>
종류(Class)	가입자격										
S-T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u>										
종류(Class)	가입자격										
S-T	<u>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u>										
13. 보수 및 수수료	금융투자회사의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에 관한 사항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종류(Class)	가입자격	종류(Class)	가입자격
		S-T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검정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S-T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가. (생략)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의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u>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u> (이하 생략) (2)~(4) (생략)	가. (현행과 동일)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의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삭제> (이하 현행과 동일) (2) ~ (4) (현행과 동일)		
<b>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b>					
1. 재무정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5.04.21 기준으로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5.04.21 기준으로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5.04.21 기준으로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5.04.21 기준으로 업데이트
---------------------	---	---	-------------------------------------

<끝>.